

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6-26호

**도시관리계획(울곡로 지구단위계획:사회복지시설) 경미한 결정(변경) 및  
지형도면 고시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19호(2008.11.20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290호(2025.05.29.)로 결정 변경(재정비)된 「울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효제동 107번지일대 사회복지시설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12일  
종로구청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울곡로 지구단위계획」 구역 내 효제동 107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선 일부가 변경되어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선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.

II. 지구단위계획 사항

① 울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  - 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  - 2)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  - 3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②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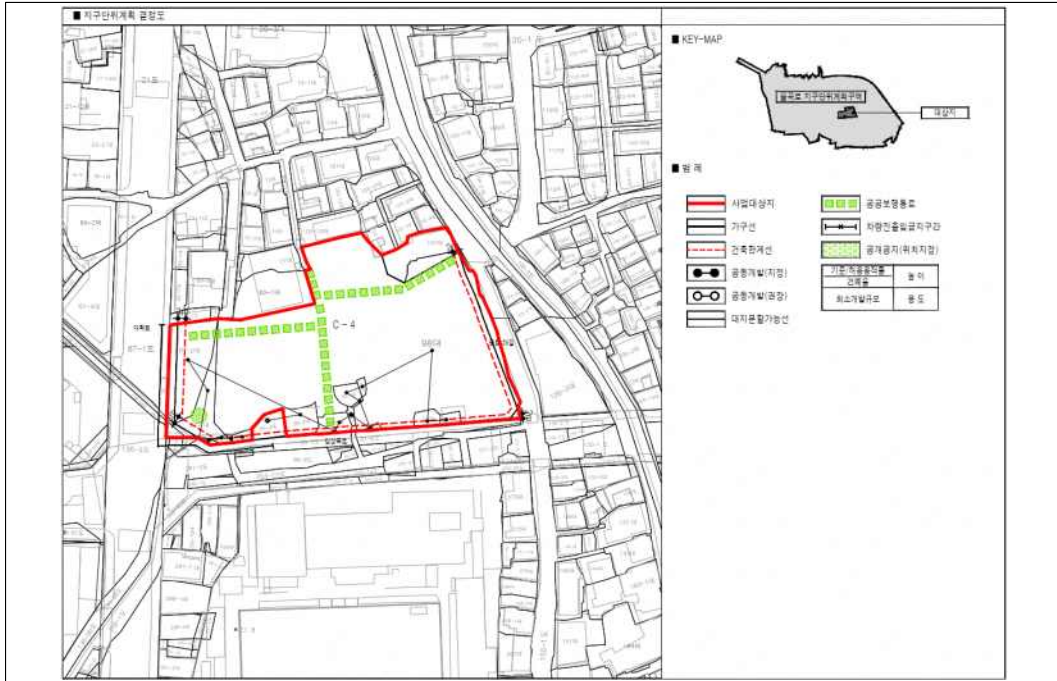
1.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도 : 변경  
※ 결정도 붙임 참조

III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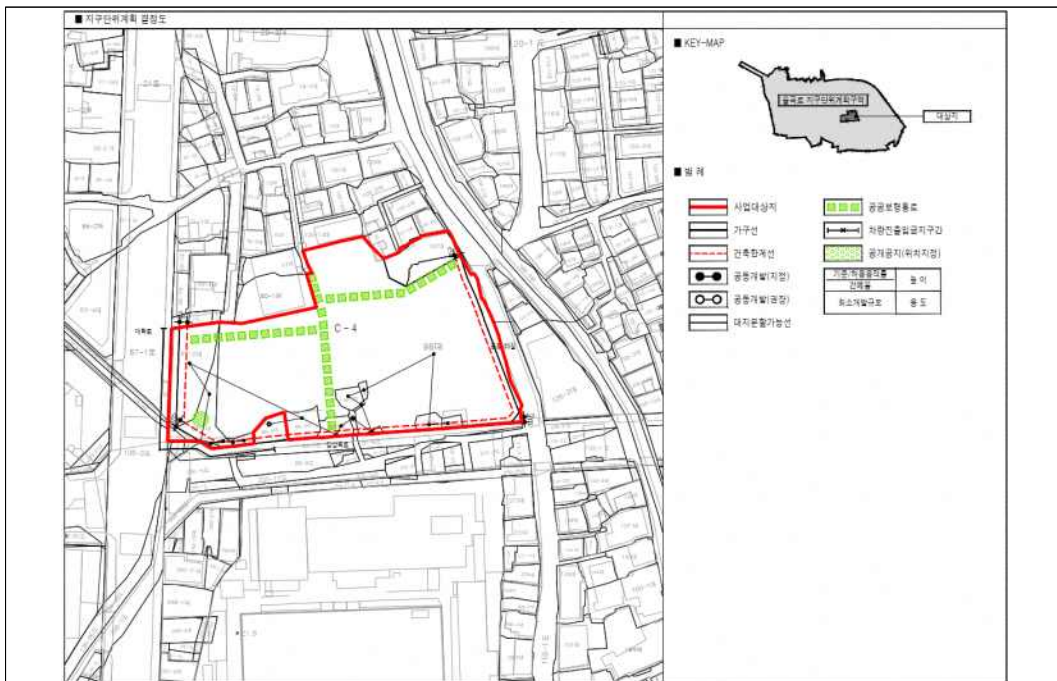
- 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IV.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건축과(☎ 2148-2813)에 비치하고 있으며,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  
이음(<https://www.eum.go.kr>)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사회복지시설 결정도 : 기정



사회복지시설 결정도 : 변경



사회복지시설 결정도 : 기정(카드도면)



사회복지시설 결정도 : 변경(카드도면)

